

2014 국가직 9급 기출문제 해설 -[교정학개론] 김지훈 교수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시험보시느라 모두들 고생했습니다.

교정학은 4-5문제를 제외하고는 다소 평이하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를 낸것 같은데,

16번, 18번, 19번은 저도 당황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일반 대학서적에도 없는 지문이었습니다.

승진시험처럼 법령의 범위를 미리 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16번은 평소 수업시간에 1번과 2번 지문은 설명을 한 것이었고,

3번은 일반적인 위원의 임기라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4번 지문은 처음 접한 지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어렵긴 하지만 정답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18번 문제는 위원회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다면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만,

19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내용이라 답답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작년에 출제했던 교수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시행령상 특별준수사항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때에도 오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교정관련 학회에서 교정학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까지만

적용하자는 다수의 견해가 있었지만, 꼭 튀는 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예측하고 지도했어야 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어 수험생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득점의 기준은 90점에서 95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정도의 기준은 75-85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하튼,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점수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7급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도 교정인 여러분의 행운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2014년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해설

문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난이도 : 중

- ①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와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 ② 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징벌대상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④ 30일 이내의 점건 제한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①

징벌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부터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까지의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즉 경고와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와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은 함께 부과할 수 없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2권 pp. 293-300>

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은 것은? - 난이도 : 하

- ㄱ.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 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ㄷ.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 ㄹ.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 ㅁ.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 ① ㄱ, ㄴ ② ㄴ, ㄹ
- ③ ㄷ, ㅁ ④ ㄹ, ㅁ

정답 및 해설 : ②

ㄴ, ㄷ이 특별귀휴 사유이다.

- ㄱ. 출석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 규칙상 일반귀휴
- ㄴ.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특별귀휴
- ㄷ.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 규칙상 일반귀휴
- ㄹ.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 특별귀휴
- ㅁ.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 규칙상 일반귀휴

<참고 : 정도교정학 제2권 pp. 400-401>

문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난이도 : 하

- ①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 ②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③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④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급한 때

정답 및 해설 : ④

- ①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 보호장비
- ②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 보호장비
- ③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보호장비, 보안장비

<참고 : 정도교정학 제2권 p. 250>

문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난이도 : 중

- ① 미결수용자가 재판·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수용자가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만 입게 할 수 있다.
-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한다.
-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③

- ① 미결수용자가 재판·국정감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으나,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는 도주의 우려가 큰 때에만 입게 할 수 있다.
-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④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것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관할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2권 pp. 368-370>

문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난이도 : 중

- ①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여성교도관 입회 없이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남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유산한 경우에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④

- ①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여성교도관 입회 없이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
야 한다.
-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수용자가 질병 등이 있는 경우,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는 전자영상장비
로 계호할 수 있다. 이때의 계호는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2권 p. 238, pp. 307-308>

문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 교도작업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난이도 : 하

-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죄명, 형기, 죄질, 성격, 범죄전력, 나이,
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의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

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수형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형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성숙 정도, 교육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①

지문은 거실 지정시 참작사유이다.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형기, 성격, 나이, 경력, 취미, 건강상태, 기술, 장래생계 등 그 밖의 수형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2권 pp. 352-354>

문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 난이도 : 중

- ㄱ. 취사 등 특히 필요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ㄴ. 수형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 ㄷ.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 ㄹ.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도작업을 신청하여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 ㅁ. 작업장려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석방 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나, 다, 르 ④ 나, 다, ㄹ

정답 및 해설 : ①

ㄹ.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교도작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ㄱ.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나 교화 또는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석방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2권 p. 346, pp. 352-354>

문 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난이도 : 하

①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③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②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즉 선고는 가능하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1권 pp. 330-336>

문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난이도 : 상

- ① 갱생보호는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의 방법으로 한다.
- ②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④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정답 및 해설 : ②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2권 p. 460>

문 10. 다음은 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지문의 개수는?

난이도 : 중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

을 명할 수 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및 해설 : ③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옳은 지문

○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부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옳은 지문

○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숙박료,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중 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옳은 지문

○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틀린지문 : 14세 이상

○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옳은 지문

<참고 : 정도교정학 제1권 pp. 388-389, 정도교정관계법령집, p. 413>

문 11. 허쉬(T.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난이도 : 중

ㄱ. 부자지간의 정,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끼리의 사랑,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 등 다른 사람과 맺는 감성과 관심을 의미한다.

ㄴ. 미래를 위해 교육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처럼 관습적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과 에너지, 노력 등을 의미한다.

ㄷ. 학교, 여가,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범죄행위의 유혹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ㄹ. 관습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형태로 관습적인 도덕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ㄱ ㄴ ㄷ ㄹ

① 애착 전념 참여 신념

② 애착 전념 신념 참여

③ 전념 애착 신념 참여

④ 전념 참여 애착 신념

정답 및 해설 : ①

애착은 주변사람들과의 감정적 결속을 의미하고, 전념은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각장의 합리적 판단을 의미하고, 통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가 많은 수록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은 참여이고, 규범에 대한 믿음은 신념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1권 p. 145>

문 12. 머튼(R. Merton)이 주장한 아노미이론에서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적응유형은? - 난이도 : 하

- ① 동조형(conformity)
- ② 혁신형(innovation)
- ③ 의례형(ritualism)
- ④ 반역형(rebellion)

정답 및 해설 : ②

하위계층의 재산범죄를 설명하는 논리가 되는 것이 혁신형이다. 즉 혁신형은 문화적 목표는 지향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 방법이 아닌 불법적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1권 p. 116>

문 13. 벌금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난이도 : 하

- ① 제3자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허용된다.
- ③ 공동연대책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벌금은 범죄인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정답 및 해설 : ②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벌금은 일신전속적 성격이지만 예외가 없는 것(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하여 받은 벌금형)은 아니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1권 p. 249>

문 14. ㉠, ㉡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난이도 : 하

소년법 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 ㉡

- ① 12 100
- ② 12 200
- ③ 14 100
- ④ 14 200

정답 및 해설 : ①

수강명령은 12세 이상 소년에 대하여 100시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 대하여 200시간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1권 p. 388>

문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난이도 : 중

- ①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보호소년 등이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재수용할 수 있다.
- ③ 보호소년 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④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훈계, 원내봉사활동,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④

원장은 보호소년 등이 규율을 위반하였을 경우 훈계, 원내봉사활동, 14세 이상인 자에게 지정된 실내에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신하게 할 수 있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1권 pp. 406-408, 정도교정관계법령집, p. 427>

문 16.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난이도 : 상

- ①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 ②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다.
- ③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④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답 및 해설 : ④

보안관찰법 제27조 제1항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가 보안관찰처분 또는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 또는 도주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 : 정도교정관계법령집, pp. 481-484, 보안관찰법 제27조 제1항>

문 1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난이도 : 중

-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②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 ③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 ④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 ③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참고 : 정도교정학 제1권 pp. 341-346>

문 18.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상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난이도 : 상

- 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및 해설 : ④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구성) 제1항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고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문 1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원호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난이도 : 상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원호협의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정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6항 :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특정 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원호협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보호관찰소장은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참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원호협의회)>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4조(보호관찰관의 원호)의 원호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원호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원호협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호관찰소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보호관찰소 관할구역의 보건소의 장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장
 2. 종합사회복지관, 알코올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실 등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관련 부서장
 3.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의 장 또는 관련 부서장
 4.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의 장 또는 교사
 5.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의 장
 6. 의사, 변호사, 약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
 7.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고 봉사활동에 열의를 가진 기업인 또는 자영업자
 8. 보호사무관 이상으로 7년 이상 보호관찰 또는 소년선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그 밖에 보호관찰업무에 관심을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를 지원할 역량을 갖춘 사람
-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손상 등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생계, 의료·교육·법률문제 해결,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 원호의 내용, 분야, 규모 등을 협의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특정 분야의 원호활동을 각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문 20. <보기 1>의 수용자 구금제도와 <보기 2>의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난이도 : 중

<보기 1>

- ㄱ. 펜실베이니아제(Pennsylvania System)
- ㄴ. 오번제(Auburn System)
- ㄷ.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 ㄹ. 카티지제(Cottage System)

<보기 2>

- a. 대규모 수형자자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형자를 소집단으로 처우하는 제도
- b. 수형자의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두며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동기부여 등 누적적 처우 방법을 시도하는 제도
- c. 수형자의 개별처우에 적정을 기할 수 있고 범죄적 악성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 d. 주간에는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여 교화개선을 시도하는 제도

ㄱ ㄴ ㄷ ㄹ

① c b d a

② c d b a

③ d a c b

④ d c a b

정답 및 해설 : ②

- a. 대규모 수형자자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형자를 소집단으로 치우하는 제도 : 카티지제(Cottage System)
- b. 수형자의 자력적 개선에 중점을 두며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동기부여 등 누진적 치우방법을 시도하는 제도 :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 c. 수형자의 개별치우에 적정을 기할 수 있고 범죄적 악성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
- d. 주간에는 작업에 종사하게 하고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여 교화개선을 시도하는 제도 : 오번제(Auburn System)

<참고 : 정도교정학 제2권 p. 99, 179, 187>